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
----------	-----

제출년월일 : '99.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1999년 2월 8일 도로법 개정, 1999년 8월 6일 도로법시행령 개정
1999년 9월 2일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구체적이
지않은 조례 제5조의 감면대상을 도로법에 의거 구체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① 제5조(점용료의 감면)를 도로법 제44조에서 열거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감면에 대한 세부적용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5에서 정한 대로 적용하도록하여 개정되는 법의 내용을 적기 적용
- ② 조례 제6조의 제3항중 5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용료 부과기준을 5000원으로 상향조정
- ③ 조례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의 내용을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의거 세분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도로법 제4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제3항중 “5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법 제44조 제1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법 제44조의 규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에 의거 도로점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도로법 제44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③도로법 제4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도로법 제44조제2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p> <p>제6조(점용료의부과·징수)①~②(생략)</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생략</p>	<p>제6조(점용료의부과·징수)①~②(현행과 같음)</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 단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 간 단 위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0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우체국 발선전송용대전화기지국, 교통광검지기, 주차에다가,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 용 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벤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15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60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90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2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5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25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750
		지름 3.0m 초과		5,250
		어스양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5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90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3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8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2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35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600
	지름 3.0m 초과			7,850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 단위		점 용 료	
			점 용 단위	기 간 단위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실안내표지, 현수막, 이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 변적	1일	100	
		기타	1㎡	1년	15,000	
	사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현수막	새로나중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1㎡	표시 변적	1일	50
1년					100	
아취		도로횡단 기타	1년	30,000 15,000		
4. 주요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승강대,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 용 변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 불 급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불 급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불 급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불 급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불 급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 불 급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토지가격에 0.04불 급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 용 변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불 급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불 급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불 급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불 급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 불 급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에 0.01 불 급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 불 급한 금액
	일시점용한 것				1일	100
8. 공사용판자벽, 받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기타				토지가격에 0.05 불 급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토지가격에 0.02 불 급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 재배				1년	토지가격에 0.005불 급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 불 급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각각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 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 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1900원)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 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 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에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9.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43條(占用料의 徵收) ①管理廳은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者로부터 占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算定 基準등 占用料의 徵收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道(第22條 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기타의 道路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p>	<p>제26조의 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定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99.8.6)</p> <p>②법 제4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